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12. 29.  
시민보사위원회

##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11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53회 정기회 제13차 시민보사위원회('97 .12. 23) 상정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 가. 제안이유

-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조정하여 종사원의 처우개선 및 장비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오수·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므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조정  
[안 제11조제11항 ----- 별표2]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전문위원 : 유제한)

본 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에 대한 내용이 시달되어 수거 대행자 종사원의 처우개선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으로써 분뇨·정화조 처리수수료는 '92년에 7.9%를 인상한 후 5년 동안 한 번도 수수료 조정이 없었고, 그동안 사회적 여건변화로 물가상승과 각종 인건비의 인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금년 5%의 인상 요청은 인상의 폭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4. 審査結果 : 원안 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	-----

제출년월일 : '97. 10. 20.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조정하여 종사원의 처우개선 및 장비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오수·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므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조정  
[안 제11조제11항 ----- 별표2]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합 의 : 이견 없음
-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첨 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18 ℓ	230		
		10 ℓ	128		
정 화 조	기 본	0.75 m <sup>3</sup>	17,680		
	초 과	0.1 m <sup>3</sup>	1,160		
	할 증	야 간	정화조 청소요금	7.0%	
		지하4층 이하	정화조 청소요금	5.0%	

※ 지하 4층 이하의 정화조 시설중 외부로 배출 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요금 제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 기 준	부과 금 액	비 고	구 분	부과 기 준	부과 금 액	비 고	
분 뇨	18 ℓ	218		분 뇨	18 ℓ	230		
					10 ℓ	128		
정 화 조	기 본	0.75m <sup>3</sup>	16,840	정 화 조	기 본	0.75m <sup>3</sup>	17,680	
	초 과	0.1m <sup>3</sup>	1,100		초 과	0.1m <sup>3</sup>	1,160	
	할 증	정화조 청 소 요 금	7.0%		할 증	야간	정화조 청 소 요 금	7.0%
						지하 4 층 이 하	정화조 청 소 요 금	5.0%
				※ 지하 4층 이하의 정화조 시설중 외부로 배출 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요금 제외				